



제1장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무엇이 문제인가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의 역사적 의미

무형문화유산이 글로벌 이슈가 되는 이유

자넷 블레이크
사이드베헤스티대학 교수

개요

무형문화유산은 전통적 문화와 그 표현물, 민간 전승물, 대중 문화 등 어떤 식으로 명명되든 간에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협약’)이 채택되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의 대다수 국가와 그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 정치적 자원으로 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2003년 협약이 채택되기 이전의 무형문화유산이 안고 있던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공식적 인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과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이 무형문화유산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했던 2003 협약 당사국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뒷받침된다. 본 글에서는 우선 무형문화유산의 힘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반영하는 국제적 차원의 문화 정책 및 법의 주요한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다룰 때 협약이 지니는 중요성을 살펴보고 지역 및 소지역 차원에서 각 당사국의 활동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된 주요 경향이 협약에 반영된 방식과 더불어 협약이 발효된 이후 지난 6년간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와 그 외에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룰 것이다.

I. 서론

실제로 무형문화유산¹(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은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하 '협약')이 채택되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의 국가들과 시민들 대다수에게 주요 쟁점이었다.² 무형문화유산의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공식적 인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과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이 현지 및 토착 문화보다 '유럽'의 대표적 문화를 우선시하며 '전통 문화'를 지나치게 연구자 중심의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데 있다.

2003년 협약의 당사국인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각양각색의 무형문화유산은 풍부한 사회, 경제 심지어 정치적 자원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에 대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 문화, 정치, 환경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그 자체가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을 구성하는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의 힘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반영하는 국제적 문화 정책 및 법의 주된 발전 경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2003년 협약이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와 협약이 발효된 이후 지난 6년간 본 협약의 이행 경험이 이에 대해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문제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다루고자 한다.

II.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발전의 정책적·법적 배경

1. '국제 정책적 배경'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발전은 오로지 경제적 현상으로만 여겼으며 GDP 증가가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주된 성공의 척도로 인식된 반면, 문화, 그 중에서 특히 후진국의 '전통 문화'는 종종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다. 1970년대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자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지적 변화가 나타났다. 자생적 발전은 현지 문화와 민족 문화(및 토착어)에 높은 가치³를 부여하고 발전 모델에서 문화가 경제 요소를

1) 예: 전통 문화, 민간 전승물, 전통 민속문화, 대중 문화, 살아있는 문화

2)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72년 협약은 자연유산뿐만 아니라 무유형의 문화유산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Lourdes Arizpe (2007) "The Cultural Politic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 1 in Janet Blake (e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Challenges and Approaches, Leicester: Institute of Art and Law.

대체하며 전통적 삶의 방식을 강조했다.⁴ 1982년 세계문화정책회의선언(Declara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⁵은 처음으로 '문화'를 유형문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사회 조직, 가치·신념 체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문화 개념과 문화 정체성의 개념을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80년 말부터 1990년 중반 사이에 지속가능한 발전⁶과 인간개발⁷ 개념이 도입되고 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보고서⁸가 발행되면서 국제 개발 이론과 관련해 중요하고도 새로운 사고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광범위한 사회 내 전체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서 현지·토착 문화의 가치와 그 유산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졌다.⁹ 1992년 리우선언의 채택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처음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발전 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였다. 리우선언은 사회·문화적 요소를 구성하며 참여적 접근법과 원주민 공동체와 현지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제3의 주축 기둥'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¹⁰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발전에 대한 접근법에는 인간의 능력(권리 형태로 지원)과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강력한 인권 보호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권리는 여러 인권 가운데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다가 유네스코¹¹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가 원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선언문 초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때늦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¹²

4) 위의 글

5) 세계문화정책회의(몬디아쿨트, 멕시코시티, 1982)에서는 문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문화란 한 사회나 사회 집단의 특성을 구성하는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정적 특징의 복합체이다. 문화는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괄한다.'

6)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명확히 표명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축' 중 하나는 사회·문화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7)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이 발전시킨 이 접근법은 유엔개발계획에서 1990년 부터 인적개발 보고서 시리즈로 채택됐다. 보다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조. UNESCO (2000) Change in Continuity—Concepts and Tools for a Cultural Approach to Development, Paris: UNESCO.

8)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되었다.

9) UNESCO (1990) The Third Medium-Term Plan (1990-95) (25C/4) at para. 215. 1990년 유네스코는 문화유산을 보유자의 살아있는 문화로 이들에 대한 보호를 "다차원적 발전을 위한 주요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10) 리우 선언으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은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장에 있어 "지역 및 전통 지식, 관습, 기술혁신"의 역할에 중요성을 부여했다(제8조 (j)호).

11) Halina Niec (ed.) (2001), Cultural Rights and Wrongs, UNESCO의 발행은 이 권리들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쏟은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다. 이 작업은 훗날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12) 그렇지만 2007년에야 비로소 UN 총회에서 이 쟁점에 대한 UN 선언문이 채택됐다. 문화적 권리에 관한 프리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1970년대부터 지적재산권법 하에서 전통 문화와 전통 문화의 표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을 발전시키려고 협력해 왔지만, 1980년대 중반 무렵 양분되어 유네스코는 지적재산권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접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래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전통 문화의 표현물과 민간 전승물과 관련해 벌인 활동¹³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법적 배경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유네스코 문화유산 조약 체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규범적 활동은 기념비적이고 유명한 문화로 대표되는 유형 문화에 관한 것이었다. 1989년에는 전통 문화와 민속의 보호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을 통해 무형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문화 및 표현물이 보다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이 권고안은 현재 지나치게 연구자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존재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2003년 협약이 광범위한 '문화적' 협약으로 탄생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했다.¹⁴ 이와 더불어 1972년 세계문화유산협약 운영지침은 1992~2005년 동안 수 차례 걸쳐 수정되면서 운영 계획의 설계 및 실행에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중목과 관련한 비물질적 요소를 등재 기준으로 허용했다.¹⁵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법 제정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 중 상당 부분이 개발도상국과 비서구권 국가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유산을 보다 잘 반영한 국제적 차원의 보호 및 등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념비적인 유형

유산을 강조하는 '유럽 중심적'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그 결과 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관리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가 주도적이던 종래의 태도(1972년 유네스코 협약 하)에서 2003년 협약에 따라 문화 공동체 및 집단의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¹⁷

2003년 협약에서 규정한 유산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역동적 실체이며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적 개발과 확실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협약 당사국 상당수가 지난 10여 년간 국가발전 계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우선시해 왔다는 점이다.¹⁸ 사실상 국가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지역 (소수 민족) 공동체, 민간 영역, 심지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문화정책도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¹⁹ 이러한 광범위한 과정에는 보호의 중심에 문화 공동체를 두고 유산 지정 활동에서 국가 주권을 축소하며 다국적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III. 지역 및 소지역 차원의 발전

2003년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 상당수가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주목할 만하며 문화가 국경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현실을 국제법이 수용한 이례적인 사례이다.²⁰ 이는 일반적인 접근법에서 문화 공동체와 이들의 유산에 얽힌 이해관계가 오로지 '국가 통제주의자의 관심사와 서로 맞서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각 국가가 이민자와 집단 이주자의 전통과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이고 따라서 2003년 협약의 운용은 이 분야의 국제법 발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분명히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다국적 등재 신청 가능성은 당사국들의 열

부르 선언(2007)의 서문에서 다음의 내용이 적혀있다.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존중은 인권의 불가분성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정당성과 일관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다."

13) 동일한 해에 유전자원·전통지식·민간전승에 관한 국가간 위원회 내에 설치됨. 전통문화표현물/민간전승표현물 보호 개정 조항·정책목표와 주요원칙(2005) [Doc.WIPO/GRTKF/IC/9/4]은 가장 중요한 활동 성과 중 하나이다.

14) 지식재산규정은 6개 중 '보호'에 관한 E절에서만 다룬다.

15) Harriet Deacon and Olwen Beazley (2007),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Values under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uschwitz, Hiroshima and Robben Island,' in J. Blake (ed.)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Challenges and Approaches UK: Institute of Art & Law pp. 93-108

16) 세계유산목록에 지리적 표현물을 보다 많이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중요한 문화유산 중 무형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퍼센트에 달한다.

17) 협약은 여전히 많은 부분을 국가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다.

18) 개발 프로그램에 무형유산이 포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 베트남의 2010~2020년 문화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과 몽골의 2008년 새 천년 개발목표(MDGs)에 기반한 포괄적인 국가 발전 전략.

19) UNESCO(2000) 앞의 글 n. 7 주석: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 변혁은]……국제관계에서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구성하게 된다."

20) 이러한 접근법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로 이동성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협약(본협약, 1979)이 있다.

렬한 호응을 받았고 현재 13건에 대한 다국적 등재가 이루어졌다. 다양한 지역에 속한 11개국이 매사냥을 등재한 것과 서아프리카의 말리와 부르키나 파소의 세누포 문화 공동체의 발라폰 연주와 연관된 문화적 관습 및 표현물을 등재한 것 등이 그 예이다.²¹ 주목할만한 점은 일부 사례의 경우 다국적 등재의 신청 당사국들이 이 외에는 다른 등재 유산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다국적 등재를 통해 자국의 유산을 인정받고 동시에 문화유산 등재 분야에서 역량과 경험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²² 한편으로 이러한 다국적 등재는 이들 국가의 문화 보호를 위한 소지역 및 국제 차원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음악·댄스 축제와 이와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소지역 차원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페루와 에콰도르 정부는 공동으로 자파라족(Zapara people)의 구전 유산과 전통을 유산으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영향에 취약한 아마존의 무형문화유산과 그 전승자, 관련 환경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서로 다른 지역(과 소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종종 공통의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 특징을 보이며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기도 하며 이를 토대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제 협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협조 체계의 주요 내용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정보 및 경험의 교류, 공유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 공유, 목록 작성법 개발을 위한 협력, 합동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와 축제의 공동 개최 등이 포함된다.²³

타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 양자간, 다자간 협력을 구축한 다양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파 점술(Ifa Divination System)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점술은 노예가 된 서아프리카인들을 통해 카리브 해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러한 역사를 기반으로 지역 간 협력의 구상이 가능했다. 협력 활동은 아프리카와 브라질의 공유 유산과 관련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21) 지금까지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상의 다국적 등재는 13건 있었으며, 그 중 매사냥은 11개 국가가 지원하고 1건은 7개 국가가, 2건은 4개 국가가, 4건은 3개 국가 그리고 6건은 2개 국가가 지원했다.

22)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명절인 누루즈(nowruz)를 등재 신청한 국가 중 하나이며, 현재 매 사냥을 대표목록에 등재하고자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공조를 취하고 있다.

23) 흥미로운 프로젝트로 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4개국(가봉, 카메룬, 콩고, 적도 기니)에서 팡(Fang) 공동체가 공유하는 무형유산인 전통 악기 음벳(Mvet)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공동체, 전문 지식을 있는 네트워크 창출을 들 수 있다.

IV. 이행을 통해 도출된 주요 쟁점

서두에서 지적한 것은 당사국들이 다양한 배경과 각 국의 서로 다른 정치 구조, 사회적 현실, 지정학적, 환경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상이함과 기타 쟁점 속에서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몽골은 대단히 다양한 사회, 문화, 물리적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만큼이나 다양한 각종 형식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광대한 국가인 까닭에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는 행정 지역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도 문화 다양성이 대단히 풍부하며 다수의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들이 존립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운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접근법을 확립하기 힘들다. 이와 대조적으로 파키스탄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국립전통민속문화원이란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관리한다.

일부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 공동체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습법과 판례법(black letter law: 오랜 기간에 걸친 판례에 의해 확립된 구체적이고 확고한 규칙) 간의 타협이 필요하기도 하다. 중남미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우에는 원주민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화 집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유한 무형문화유산은 대체적으로 이에 우호적 영향을 미치는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당사국들이 따르는 무형문화유산 범위는 일반적으로 협약 제2조 제2항에 기술된 내용을 반영하지만, 국가에 따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이 있다. 이집트의 경우 (구전 표현물 항목 하에) 민간 전승물인 알 시라흐 알 힐라야흐 서사시와 보호 도구를, (사회적 관습의 항목 하에) 악행을 막는 관례를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한국은 무형문화유산을 목록화해 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약의 범위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모든 종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종목에 필요한 기술이나 적합한 도구를 제작하거나 보수할 때 꼭 필요한 기술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²⁴ 페루의 기록화 범주에는 토착언어, 구술전통, 전통적 정치제도, 민족 의학, 민족 식물학, 식도락 그리고 이와 같은 문화적 관습과 직접 연관된 문화 공간이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록화 작업에 사용되는 기준은 대표목록의 기준과 비교할 때 대체로 유사성이 많지만 각 지역적 특색도 지니고 있다. 멕시코가 채택한 기준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1) 정교화 및 조직화를 위한 일반 기준(14항목)과 (2) 공동체의 참여를 위한 일반 기준(3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몽골의 목록화 기

24) 연극, 무용, 공예기술, 기타 의식, 놀이, 무술, 요리법 등을 일컫는다.

준에는 보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전통적 생활 방식과 풍속의 독특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의 역할이 포함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그 기준이 상당히 다른데 유산의 가치, 전승력, 전승 환경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상세한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전승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종목의 생명력이 고려되고 있다.

여타의 문화유산 조약과 차별화되는 2003년 협약의 핵심적 특징은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및 목록화 작업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와 관여를 권장하는 것이다. 실천의 중요성은 인권법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강조되었다. 실제로 참여하는 수준은 상당히 다를지라도 대부분의 참여국은 이를 필수 사항으로 수용했다. 몇몇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제안하고 목록작성을 위한 질문서를 작성하며 보호 방안을 위해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면담자들(예: 공동체 일원, 현지 기업의 대표자들, 여성·아동 협회, 교육 협회 등)이 목록화 작업을 보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비정부 조직 역시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의 지정 및 목록화 작업을 진행할 때 자문가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활용 방법론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다양한 지역에 속한 여러 국가들의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예로 시리아의 라와페드(Rawafed) 프로젝트는 지역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로, 문화 지도 작성과 문화를 고려한 사회, 경제 계획을 수행해낼 공동체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몽골의 '2008년 새 천년 개발목표에 기반한 포괄적인 국가발전 전략의 승인은 유·무형 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복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벨로루시의 '소도시, 마을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은 무형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환경을 개발하고자 여러 방안을 제공하고 투자를 실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멕시코의 오토미 치치메카(Otomí-Chichimecas) 족의 유산 보호 활동에는 특히 도로 개선 프로그램, 청정수 시스템 구축, 현지 고용 창출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된다.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접근법에는 수공업 산업과 관광을 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장인 기반의 수공업은 그 자체가 지닌 문화, 경제적 성격과 상업적 판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중성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여성들이 전통 수공예를 이용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융자 지원(일명 마이크로 크레디트), 전통 공예품의 생산·유통·마케팅 지원, 무형문화유산이 진품임을 보장하기 위해 장인의 공방이나 유적지 현장에서 체험 프로그램 제공, 지역 장인의 경제적·도덕적 권

리 보호 및 공예품에 대한 전통제품 품질인증서 발행, 일반인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안으로 시연 장소를 갖춘 소규모 작업장 설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2005년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은 무형문화유산위원회가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무형문화유산 종목과 그 장소는 관광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황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공동체 기반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이 왜곡되거나 물리적 환경이 파괴되고 유산의 보유자나 문화 공동체가 악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또한 상당수의 유산은 자연환경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 삼림 파괴, 그 결과 초래된 도시-지방 간의 이주 및 전통적인 삶과 삶을 떠받치는 자원의 손실 등으로 인해 그 생존력이 위태로울 수 있다.

공통의 주제로 무형문화유산의 주된 전수 수단으로서 언어의 중요성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전승과 표현이 여전히 구두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언어는 더욱 중요하다. 이 주제는 대단히 흥미로우며 두 가지 측면, 즉 (1) 언어 정책이 무형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2)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현실과 협약 상의 무형문화유산 범위를 비교할 때에는 보다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더욱이 기록화와 구전 문화전통 간의 관계는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구전 전수가 위협을 받는 곳에서 기록화가 구전 방식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주는지 아니면 어찌됐건 구전 방식을 왜곡시키는지,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종목의 형태에 변화를 주면(예를 들어 젊은 층의 보다 큰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진정성'에 위협이 되고 왜곡 가능성이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적응력과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진화인 것인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해 연구할 만하다.

여태껏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주제는 등재된 일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가 배타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이거나 성별 역할 분담이 매우 뚜렷하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것이 비차별성과 평등이란 기본 원칙에 본질적으로 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볼 만하다. 또한 공동체와 집단이 협약의 목적상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관습을 정당한 유산으로 장려하거나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동체의 바람과 협약의 정신이 서로 명백히 상충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